#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104 발의연월일: 2024. 10. 31.

발 의 자: 구자근 • 박덕흠 • 박준태

김선교 • 인요한 • 권영세

고동진 · 강선영 · 김도읍

안철수 · 조지연 · 김성원

의원(12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통계청은 기획재정부 소속의 외청 중 하나로 설치되어 있으나, 국가의 중앙통계기관으로서 「통계법」에 따라 경제 분야의 통계 이외에도 인구·주택·농림어업 등 여러 분야의 통계를 관장하고 있어 업무와 조직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통계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통계관리처로 격상하여 각종 총조사 등 통계청에서 수행하는 사업의 효율성·적시성을 제고하고, 각 부처에서 생산·관리하는 통계데이터의 공유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안제25조의2 신설 등).

법률 제 호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통계관리처장"으로 한다.

제3장에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통계관리처) ① 통계의 기준설정과 인구조사 및 각종 통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통계관리처를 둔다.

② 통계관리처에 처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처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제27조제9항 및 제10항을 각각 삭제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직폐지 및 신설에 따른 소관사무 및 공무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통계청장의 소관사무 중 이 법 제25조의2제

1항에 규정된 사무는 통계관리처장이 승계한다.

- ② 이 법 시행 당시 통계청 소속 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은 통계관리처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 ③ 이 법 시행 당시 제1항에 따라 통계관리처장이 승계하는 사무와 관련된 기획재정부령은 통계관리처의 소관 사무에 관한 총리령으로 본다.
- 제3조(종전의 법률에 따른 고시·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 전에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통계관리처장이 승계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통계청장이 법률에 따라 행한 고시·행정처분 및 그 밖의 행위와 통계청장에 대한 신청·신고 및 그 밖의행위는 해당 사무를 승계하는 통계관리처장에 대한 행위로 본다.
-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령을 포함한다)에서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통계관리처장이 승계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통계청, 통계청장, 통계청 소속 공무원 또는 기획재정부령을 인용한 경우에는 통계관리처, 통계관리처장, 통계관리처 소속 공무원 또는 통계관리처의 소관 사무에 관한 총리령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 신・구조문대비표

혅 했 개 정 아 제13조(국무회의의 출석권 및 의 제13조(국무회의의 출석권 및 의 안제출) ① 국무조정실장・인 아제출) ① -----사혁신처장·법제처장·식품의 -----식품의약품 약품안전처장 그 밖에 법률로 안전처장·통계관리처장-----정하는 공무원은 필요한 경우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5조의2(통계관리처) ① 통계의 기준설정과 인구조사 및 각종 통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통 계관리처를 둔다. ② 통계관리처에 처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처장은 정무 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 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 로 보한다. 제27조(기획재정부) ① ~ ⑧ 제27조(기획재정부) ① ~ ⑧ (현행과 같음) (생 략) ⑨ 통계의 기준설정과 인구조 <삭 제> 사 및 각종 통계에 관한 사무 를 관장하기 위하여 기획재정

부장관 소속으로 통계청을 둔 <u>다.</u>

<u>⑩ 통계청에 청장 1명과 차장</u> <u><삭 제></u>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 <u>다.</u>